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89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강명구 · 김미애 · 나경원
우재준 · 엄태영 · 구자근
성일종 · 김용태 · 서천호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만 간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나 예산 보조를 이끌어낼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

및 면허범위 축소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교통권 보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고령운전자의”를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의”로 한다.

제8장에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등) ① 고령운전자는 제93조 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제85조제4항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 범위의 축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거나 운전면허 범위를 축소한 고령운전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의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고령자의 운전면허 범위 축소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95조의2제3항

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 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 타내는 표지(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 부할 수 있다.</u></p> <p>② (생 략)</p> <p><u><신 설></u></p>	<p>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 ----- <u>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하 “고령운전자”라 한 다)의</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95조의2(고령운전자의 운전면 허증 자진반납) ① 고령운전자 는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다.</u></p> <p><u>②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에게 제85조제4항에 따라 자신 의 운전면허 범위의 축소를 요 청할 수 있다.</u></p> <p><u>②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u></p>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
② (생략)
<신설>

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거나 운전면허 범위를 축소한 고령운전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의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고령자의 운전면허 범위 축소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95조의 2제3항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